

보도 일시	2022. 11. 2.(수) 10:00	배포 일시	2022. 11. 2.(수) 10:00
담당 부서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송이 (044-200-6747)
		담당자	사무관 신성임 (044-200-6793)

## 법제처,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 \* 지방자치단체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①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행정**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시행, ○○살리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치규범임.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다른 많은 기초지방자치체의 자치입법의 모델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운영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뿐 아니라 자치사무인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어 자치입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③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위로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조례안과 같은 지원제도가 필요함.

④ 「○○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청년사업자 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의 확대, 청년의 거주·고용 지원시설 및 청년친화센터 설치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주요 기제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시책사항이고, 이러한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치규범의 입법적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유사한 조례의 개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